

#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3. 27  
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18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99. 3. 26) 산업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 가. 제안이유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 등에 관한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 1)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 2)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검토
  -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한봉수)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며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정하게 알수 있도록 하고, 수질향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판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7. 기타사항 : 없 음